

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 조사 공고

광명시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20.

광 명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
- 사업기간 : 2027년 상반기 ~ 12월(단년도 계속사업)
- 지원대상 :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기업(제조업)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
- 지원규모 : 5건 내외
- ※ 2027년 예산 편성 검토 후 지원여부,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.
- 사업내용

지원 유형		지원대상	지 원 내 용
노동 복지	노동 환경	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(제조업)	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 등 ※ 매칭비율 : 지자체 80%(도 30%, 시군 70%) 기업 순이익 ¹⁾ 별 차등 보조 (20%~30% 이상)
	지식 산업 센터	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	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, 공공시설물 등 ※ 매칭 비율 : 지자체 80%(도 30%, 시군 70%), 기업 20% 이상
소방 안전	작업 환경	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(제조업)	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작업대, 적재대, 환기·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 ※ 매칭비율 : 지자체 80%(도 30%, 시군 70%)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(20%~30% 이상)
	소방 시설	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(제조업)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	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자동확산 소화기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피난설비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장소 설치 등 ※ 매칭비율 : 지자체 80%(도 30%, 시군 70%)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(20%~30% 이상)

1) 순이익: 전년도 재무제표(표준손익계산서)상 “당기순이익(당기순손익)”에 해당하는 금액

2.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8. 20.(목) ~ 9. 17.(목) 18:00까지 (점심시간 12~13시 제외)
- 신청방법 : 방문접수(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,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)
- 문 의 :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(☎ 02-2680-2266)

3. 제출서류

구분	구비서류
공통서류	① 사업계획서 1부 【서식1】
	㉠ 중소기업 자부담 협약서, 시설물 유지 동의서,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포함 【서식2】
	㉡ 지식산업센터: 자부담 협약서, 시설물 유지 동의서, 입주기업 동의서 포함
	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【서식3】
	③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사업자등록일 확인용)
	④ 국세 납세증명서 1부(체납 여부 확인용)
	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(체납 여부 확인용)
	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(고용인원 확인용)
	⑦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(견적서 및 내역서) 1부
추가서류 (해당업체)	⑧ 최근 3년(2023년~2025년) 재무제표 1부 (※ 노동환경, 작업환경, 소방시설만 해당)
	⑨ 건축물대장 1부
	❶ 공장등록증명서 1부(※ 공장 건축면적 500㎡ 이상인 경우)
	❷ 여성기업 확인서 1부
	❸ 뿌리기업 ²⁾ 확인서 1부
	❹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³⁾ 인증서 1부
	❺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
	❻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⁴⁾ 증빙서류(장애인근로자명부 및 장애인증명서 등) 1부
	❼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서 1부
	❽ 경기도 「기업 RE100」 참여기업 확인서 1부(발급처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
	❾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⁵⁾ 1부(발급처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
	❿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⁶⁾ 인증서 1부

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**공고일 현재 유효한 서류**를 제출하여야 함

※ ❹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과 ❿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은 중복 가점 불가

※ 선정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2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3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4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.1% 이상 장애인 고용

5)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) 상 무재해인 경우

6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: 공모일 기준 「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」에 따라 인증기간이 유효한 경우

4. 추진절차

단 계	일 정
신청서 접수 (기업→광명시)	2026. 8. 20.(목) ~ 9. 17.(목) 18:00까지
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(광명시, 경기도)	(광명시) 2026. 9. 18.(금) ~ 9. 30.(수) (경기도) 2026. 10월 ~ 11월
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(경기도)	2026. 12월
지원대상 선정통보 (광명시→기업)	2027. 1월
사업추진 (선정기업)	2027. 2월 ~ 10월

※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세부지원내용

① 노동환경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관내 소재 중·소기업 (제조업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·보수 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《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》 - 지원대상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축 관련 사전협의 - 제외대상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 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40백만원(도비 12백만원, 시군비 28백만원) 이내 ※ 기숙사 신축 → 도비 30백만원,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노동·작업)이 있는 기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
2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관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(준공 후 7년 이상 경과)
지원내용	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, 노후 기계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.설비 개.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지원요건	■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■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■ 지자체 80%(도비 30%, 시.군비 70%), 자부담 20%(이상)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60백만원(도비 18백만원, 시군비 42백만원)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■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3 소방안전(작업환경)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관내 소재 소기업 (제조업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·공기순환장치(산업용) 설치, LED조명 설치, 컨베이어 작업대 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계·설비, 생산설비 부착·결합 작업대(주문제작 등), 냉난방기, 작업환경 개선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반 사무·생활·청소용 비품 및 장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20백만원(도비 6백만원, 시군비 14백만원)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노동·작업)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
4 소방안전(소방시설)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■ 관내 소재 중·소기업 (제조업) ■ 관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(준공 후 7년 이상 경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■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피난설비,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·개보수 ■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■ 노후 전기배선 교체(작업공간만 해당: 연구실, 사무실 제외) 등 ※ 지원제외 :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(예) 일반 소화기, 간이소화용구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(중소기업) 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(지식산업센터) ■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■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지식산업센터 : 지자체 80%(도비 30%, 시·군비 70%), 자부담 20%(이상) 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 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·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·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·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70백만원(도비 21백만원, 시·군비 49백만원)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소방시설)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
6. 유의사항

가. 사업 신청 관련

- **최근 5년간(2022년~2026년)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불가**
 - 분야 관계없이 지원이력 있는 기업 지원 불가
 - (※ 단, 소방시설 분야 이력에서 타분야 지원 가능, 소방→소방 불가)

기존 지원 이력(2022년~2026년)	→	2027년 신청 분야	신청 가능 여부
소방시설	→	소방시설	불가
소방시설	→	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	가능
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	→	소방시설	가능
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	→	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	불가

-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(노동, 지식, 작업) 중복지원 불가
(예) 기숙사(노동) + 바닥도장(작업) 지원 **불가**
- 단일사업 분야 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
(예) 기숙사(노동) + 화장실 개보수(노동) 지원 **가능**
-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(예) 바닥도장(작업) + 자동화재탐지설비(소방시설) 지원 **가능**

나. 사업 선정 관련

- 사업계획서 미흡, 지원 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 불가
-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
(예) 과거 지원이력 없는 기업 1순위 선정, 10년전 지원기업 2순위, 9년전 3순위... 등
-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
- 2027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선정
-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

다. 사업 추진 관련

- 사업 선정 후 자부담금이 입금된 사업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필수
(자부담금 미확보시 사업 불가)
- **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 부담**
-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활용 예정으로
사업 관련 서류 제출 외 추가로 전산처리 작업 필요함에 유의
- 준공 후 기업에서 전체 금액 부담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후 교부 방식으로 진행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라. 사업 적정성 여부 사전 확인

- 사업대상의 인허가, 신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가능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
 - 불법건축물 여부, 공장등록 여부(공장면적 500㎡ 이상일 경우)
 - 도로 확·포장, 상하수도 설치 시 토지 사용 동의 여부 등
 - 기숙사 신축, 증축 및 공장 개보수 관련 건폐율, 용적률, 건축물 용도 등

마. 시공사 선정 및 계약 관련

- 사업비 15백만원(부가세 제외) 이상 공사는 시공사 선정 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로 선정 필수
 - ※ 등록여부는 대한전문건설협회(<https://www.kosca.or.kr>),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scon.net>)에서 확인 가능
-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, 해당 업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함
- 사업비 20백만원(부가세 제외) 초과인 공사,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누리장터(nuri.g2b.go.kr)를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
 - ※ 단,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(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30조)
 -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, 물품제조, 구매용역 : 시공업체가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(증빙서류 제출)
 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%이상인 경우